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11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2.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의원)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방역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자 등에게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방역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한 농가가 오히려 감액의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후단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황충연)

개정안은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감액에 대해 경감 적용을 하더라도 최종 지급액을 가축평가액의 80%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상한 규정을 완화하여, 그 상한을 90%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후단).

현행법은 사육제한명령 위반, 가축전염병 감염의심 가축 미신고, 예방접종 미이행, 방역기준 위반, 가축 전염병의 재발생 등 농가의 과실 또는 방역 실패가 인정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의 5%에서 100%까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질병관리등급 우수 농가, 가축전염병의 조기신고 농가, 무항생제 인증농가 및 방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 1등급, 구제역 등 가축전염의 최초신고, 무항생제 인증 등의 농가는 5%에서 10%까지 감액에 대해 경감률을 적용하고 있음.(참고 자료2 감액의 경감기준)

다만, 현행 제48조제4항 후단은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액 경감요건을 충족한 농가라 하더라도 최종 지급액은 가축평가액의 80%까지만 지급 받게 되는 상황임.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상한액이 가축평가액의 80%로 제한됨에 따라

농가로부터 방역기준 준수 및 조기 신고 등을 유도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최종 지급 가능한 보상금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여, 방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조기 신고를 준수한 농가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도 방역 기준을 준수한 농가가 상한 규정으로 인해 감액 경감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방역 참여 의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90%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